

이 영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.

제9조의2를 삭제한다.

제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9(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) 법 제17조의 8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”이란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.

별표 3 제1호가목 후단 중 “위반 횟수 적용”을 “기간의 계산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부 칙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) ① (생략)	제2조(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“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	<삭제>
③ ~ ⑦ (생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9조의2(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) 법 제15조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.	<삭제>
1.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	
2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4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	
<신설>	제9조의9(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

	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) 법 제17조의8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”이란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.
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16조 관련)	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16조 관련)
1. 일반기준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	1. 일반기준 가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간의 계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설>	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나. (생략)	다. 현행과 같음